



2011년도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
「일반연구지원-기본연구」 신청요강

2011. 1.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주요사항 신규대비표

구분	2010년	2011년	비고
1. 지원예산	① 총예산: 41,490백만원(1,223과제 내외) - 신규: 26,564백만원(975과제 내외) - 계속: 14,926백만원(248과제 내외)	① 총예산: 42,494백만원 - 신규: 26,633백만원(960과제 내외) - 계속: 15,861백만원(275과제 내외)	
2. 지원규모 (연/과제당)	① 일반연구(공동연구): 연 150백만원 이내 ② 일반연구(단독연구): 연 25백만원 이내 ③ 정액연구(단독연구): 연 7백만원	① 일반연구(공동연구): 연 100백만원 이내 ② 좌동 ③ 좌동	
3. 지원기간	① 일반연구(공동연구): 1~3년 ② 일반연구(단독연구): 1~3년 ③ 정액연구(단독연구): 1년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4. 연구진 구성조건	① 공동연구원 참여신분 - 일반공동연구원/박사급연구원/ 전임연구인력	① 공동연구원 참여신분 - 일반공동연구원/박사급연구원/ 전임연구인력(삭제)	
5. 심사관리	① 단독/정액연구 - 요건심사→전공심사(온라인+PM Review)→종합심사 ② 공동연구 - 요건심사→전공심사(패널심사) →종합심사	① 좌동 ② 좌동	
6. 과제관리	① 결과보고서 미제출자는 연구비 환수와 2년간 연구비 신청제한 ② 연구결과물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5년간 연구비 신청 제한(단, 제재기간 중 최종결과물 제출 시 신청제한 해 제)	① 좌동 ② 연구결과물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5년간 연구비 신청 제한(단, 제재기간 중 최종결과물 제출 시 평가를 통해 제재 해지 시점을 정함) ③ 연차평가주의제도(Yellow 카드제) 도입 - 70점 이상 80점 미만 주의(Yellow), 주의 2회 누적과제는 강제탈락	
7. 연구결과물 제출	① 단독연구 - 1년(1편이상), 2~3년(2편 이상) ② 공동연구 : 1~3년(2편 이상)	① 단독연구 : 연간 1편 이상 ② 공동연구 - 1~2년(2편 이상), 3년(3편 이상)	
8. 추진일정	① 신규 과제(1회 공모) - 1월 공고/3~4월 심사/5월 지원 ② 계속 과제 - 4~8월 연차보고서 접수, - 연구개시 : 공동연구 - 5. 1. 단독연구 - 5. 1.	① 좌동 ② 좌동	



차 례

I.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 사업목적 1
- 지원방향 1

II. 지원 내용 1

- 지원예산 1
- 지원분야 및 대상 2
- 지원유형 2
- 연구개시일 2

III. 신청방법

- 신청자격 2
- 신청기간 및 방법 4
- 신청절차 4
- 신청 및 참여 제한 7

IV. 심사 및 선정

- 심사단계 9
- 심사절차 및 내용 9
- 선정확정 및 협약체결 0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연구비 지급 1
- 연구비 관리 1

VI. 연구과제 사후관리

- 계속과제 관리 2
-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3
-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 3
- 연구성과 관리 4

VII. 기타사항

- 간접비 지급 9
- 기타 참고사항 9

[붙임 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17

[붙임 2] 심사항목 및 배정 17

[붙임 3] 공동연구계획서 양식 21

[붙임 4] 단독연구계획서 양식 26

I.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 사업목적

- 인문사회분야의 기초가 되는 연구를 지원하여 창조적인 지식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함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창의적 개인·소규모 중심의 연구저변 확대

● 지원방향

- 지속적인 연구지원이 필요한 기초연구에 대해 안정적이고 다양하게 지원
- 연구 집중 형태로의 연구지원 방식 전환
 - 기본연구(공동)의 연구비를 150백만원→100백만원으로 조정
- 우수기초 성과물 발굴 및 홍보를 통한 성과확산
 - 창의적 우수성과물 발굴 강화 및 기초연구의 저변확대
- 창의·소외분야 과제는 예산의 5% 이내에서 선정(기본연구-공동 제외)
- 융합연구 장려를 위해 예산의 5% 이내에서 선정(우수논문사후지원 제외)
- 다년과제의 경우 연구기간에 대한 심사를 강화(연구주제 성격상 다년연구가 필요한 경우만 인정)
- 연구성과에 대한 계속과제 연차평가 강화
 - 연차평가지 “주의(Yellow)”제도를 도입하여 중간 연구성과가 미진한(70점이상 80점 미만) 과제 주의 판정. 주의(Yellow) 2회 누적 과제는 자동 탈락
- 다년도 과제의 최종연구결과물 제출기준 등 성과평가 기준 강화

II. 지원 내용

● 지원예산

- 지원비 : 총 42,494백만원
 - 신규지원 : 26,633백만원(960과제 내외)
 - 계속지원 : 15,861백만원(275과제 내외)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 인문사회 분야(예술·체육학 포함)

※ 융합연구과제의 경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우대

※ 융합연구과제 지원의 경우

- 융합연구과제란 “인문사회(복합.예술.체육 등 포함)와 이공계(자연공학.공학.의약학.농수해양) 분야 간의 융합연구과제”를 말함. 즉, 인문사회 학문분야에 기반을 둔 이공계 학문분야와의 융합연구과제를 의미함
- 인문사회 학문분야내의 대분류간 학제연구는 일반과제로 지원함

- 지원대상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지원유형

지원유형		지원규모	지원기간	비고
단독연구	일반	연 25백만원 이내	1~3년	5.1 연구개시
	정액	7백만원 이내	1년	
공동연구		연 100백만원 이내	1~3년	
우수논문사후지원		연 7백만원(논문)	-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연구개시일 : 2011년 5월 1일

Ⅲ. 신청방법

● 신청자격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함
 - ※ 연구책임자는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이어야 함

2006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국제학술지(SCI&SCIE, A&HCI, SSCI, SCOPUS) 게재논문, 등록 완료된 국제특허 또는 전문학술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등의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이공분야 연구자는 5편 이상) 이어야 함

- 단독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 공동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함
- 단, 상기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시에 입력하여야 함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내용

제 5 조 (지급대상) 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의 대학(대학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또는 그 소속교원
2.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연구자
3. 「대한민국학술원법」제13조 및「대한민국예술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예술활동을 지원받는 과학자.예술가 또는 그 단체
4. 대학의 시간강사
5. 국내외의 대학 등의 기관에서 연수 중인 자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6. 학술연구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자

○ 연구자 참여자격

- 단독연구(정액연구 포함) : 연구업적 3편 이상
- 공동연구

구분		참여자격
연구책임자		연구업적 3편 이상
공동연구원	일반공동연구원	
	박사급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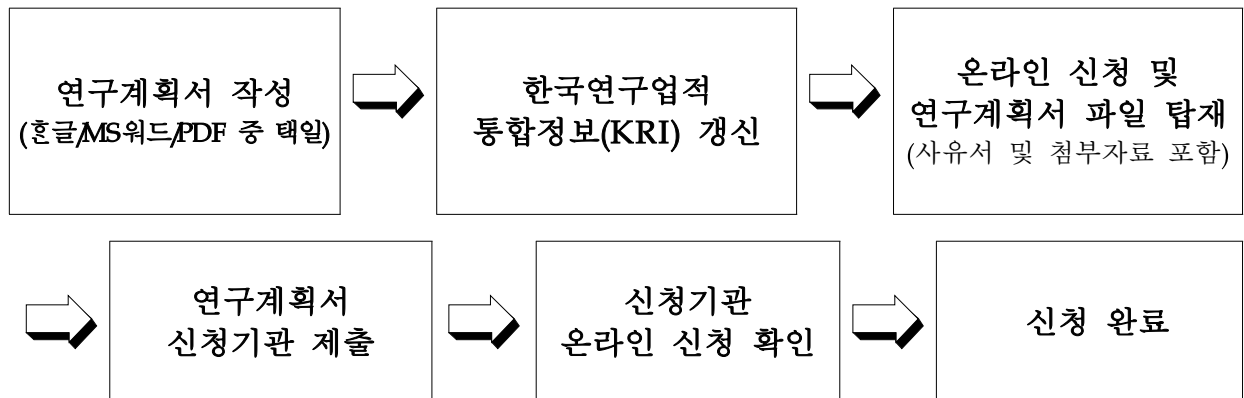
●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1) 연구자 신청 : 2011. 2. 23(수), 09:00 ~ 3. 2(수), 18:00까지
- 2) 기관 확인 : 2011. 3. 3(목), 14:00 ~ 3. 4(금),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절차



가. 온라인 신청 전

- 1) 연구참여자는 재단 홈페이지 정보서비스→연구기반정보→「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KRI)」에서 본인의 정보(연구업적 등)를 입력, 수정하여야 함(신청 후 추가 등록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을 취소하시고 다시 신청하여야 함)
 - ※ KRI 정보 갱신 시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 등 필수 입력사항 미기재 시 온라인 신청 불가(신청 전 사전 확인). 정보 공개 여부는 반드시 공개로 설정
- 2)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자격으로서 연구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함.
- 3) 온라인 신청시 연구계획서 파일을 동시에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흔글」, 「MS워드」, 「PDF」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단의 소정 양식으로 미리 작성 하여야함 (PDF 파일로 탑재하는 것을 권장함)
- 3) 시간강사는 연구지원 신청기관을 정하여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와 연구비 신청과 선정 후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과 선정 후 원활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3) '연구장비' 신청 시 동일 또는 동종 기기의 소속기관 보유 현황(구입년도, 기기명, 기기사양, 보유수량)을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를 통하여 파악하여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
- 4) 신청 연구과제의 전공분야를 재단 연구분야분류표(재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사업마당→연구분야분류표→학술연구분야)에서 사전 확인하여 해당 전공분야의 담당 학문단을 확인해 두어야 함. 연구분야 및 심사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학문단에 연락하여야 함

나. 온라인 신청

- 1) 연구지원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는 연구자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연구계획서" 파일을 작성하여 탑재하여야 하며, 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만 볼 수 있음
- 2) 연구책임자 및 일반공동연구원의 대표업적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연구실적 중 3편을 선택하여야 함
 -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SCI&SCIE, A&HCI, SSCI, SCOPUS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 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여야 함
 -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연구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구자는 연구 실적에 상응하는 조사보고서 또는 활동실적을 입력하여야 함
- 3) ‘연구장비’ 신청시 동일 또는 동종 기기의 소속기관 보유 현황(기기명, 기기사양, 구입년도, 보유수량) 및 사유를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여야 함
 -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에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PC,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을 구입하는 경우 연구비를 조정할 수 있음
- 4) 연구비 산출시 특정 세부항목이 전체 연구비의 70%를 초과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입력해야 함
- 5) 학술단체를 통하여 연구비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기기 및 학술문헌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부득이 신청하여야 할 경우 활용계획(비치장소 포함)을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해야 함
- 6)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마감일 종료 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 교체 및 수정한 후에는 신청완료 버튼을 반드시 다시 클릭해야함(클릭하지 않았을 경우는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 7) 온라인 신청 및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 과제번호는 신청 마감 이후에 일괄적으로 부여됨(접수번호와 과제번호는 다름)
 -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기 전 『인쇄-미리보기』에서 1쪽씩만 보이는지 확인한 후 탑재함(『인쇄-인쇄방식』을 ‘자동인쇄’로 바꾼 후 저장)

- 8) 융합연구과제로 신청할 연구자는 연구분야분류표의 대분류 기준 중 2개를 반드시 심사희망분야 1,2순위로 선택해야 함

※ 연구분야분류표 대분류 학문분야 기준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 농수해양, 예술체육, 복합학

다. 온라인 신청 후

1) 연구책임자

-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력내용(계획서 포함) 1부를 출력하여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 제출

2)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

-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신청 입력내용 1부를 제출받고 기한 내에 신청기관 확인을 완료해야하며, 확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되지 않음

● 신청 및 참여 제한

가.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

- 본 기본연구 내에서는 세부유형별로 각각 1과제 신청 가능
 - ※ 일반연구지원사업은 신진연구, 기본연구(단독), 기본연구(공동) 중 2과제 이내로 신청할 수 있음.
 - ※ 상반기 사업군 내에서 1인이 총 2과제까지 신청 가능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로 인하여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로 인하여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중인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0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제재조치의 내용(범위 및 기간 등)에 따라 신청제한

-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본 사업에 인건비를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기간만료일이 2011. 12. 31. 이전인 경우는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수행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을 중지하고 신규지원 연구비에서 지원
- 대학·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소속된 자는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 자격으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음

나.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본 기본연구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인문사회 연구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3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하며, 인건비는 중복 수혜할 수 없음
 - 타 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경우 동 사업에는 신청 제한되며, 공동연구원으로 2과제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 상기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관련 1인 3과제 참여기준의 범위는, 기존 학술연구지원사업(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지원 과제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적용 사업의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공계 연구자가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로 한정함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만료일이 2011. 12. 31. 이전인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기간 만료일이 2012. 1. 1. 이후인 과제라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정책주제형 대학중점연구소과제 포함),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 개인연구(일반기초연구-우수논문사후지원, 우수학자지원사업), 사회과학특정연구지원 (연구자네트워크), 소규모연구회지원사업, 인문학진흥사업 중 저술출판지원 사업 (우수저서), 인문주간 및 강좌지원의 과제(시민인문강좌, 상설인문강좌)는 참여 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
-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박사후국외연수지원사업 수혜자 중 연구기간(지원기간)이 본 사업과 중복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급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최종선정에서 제외함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과제의 결과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제재기간에 저촉되는 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최종선정에서 제외

참여제한은 연구비 신청시에도 적용될 수 있음. 즉, 신청한 과제(연구자)가 선정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참여제한에 저촉되면 신청이 불가능함

IV. 심사 및 선정

● 심사단계

- 심사방법(단독연구)

단계별	심사구분		심사내용	비 고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재단
2단계	전공 심사	온라인심사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심사	전공심사단
		PM Review	온라인 심사 결과 검토	PM
3단계	종합심사		심사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심사단

※ 융합연구과제의 전공심사 : 패널심사

- 심사방법(공동연구)

단계별	심사구분		심사내용	비 고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재단
2단계	전공심사 (패널심사)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심사	전공심사단
3단계	종합심사		심사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심사단

※ 융합연구과제의 전공심사 : 패널심사

● 심사절차 및 내용

가. 제 1 단계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나. 제 2 단계 : 전공심사

<단독연구>

- 심사방법: 온라인심사 + PM Review
 - 온라인심사 : 온라인 전문가 개별 심사
 - PM Review : 해당 학문분야 PM이 전공심사 과정의 결과를 검토하는 제도, 심사자간 점수 격차에 대한 보완 및 검증
- 심사내용 :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우수성 등
- 심사항목 및 배점 : [붙임2] 참조

<공동연구>

- 심사방법: 패널심사
 - 패널심사 : 패널내 합의심사
- 심사내용 :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우수성 등
- 심사항목 및 배점 : [붙임2] 참조

<단독연구 및 공동연구의 융합연구과제>

- 심사방법: 전문가 집중심사(패널심사)
 - 패널심사: 패널내 합의심사
 - 심사자구성: 심사요청분야 1순위와 2순위를 고려하여 전문위원(RB)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 활용
- 심사내용: 융합연구의 적합성 등
- 심사항목 및 배점 : [붙임2] 참조

다. 제 3 단계 : 종합심사

- 심사주관 : 종합심사단
- 심사내용
 - 심사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창의·소외분야 과제 선정 포함)
 - ※ 평가결과 최종 점수 7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함.

● 선정확정 및 협약체결

- 가. 예비선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과제를 공개하여 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
- 나. 최종선정 :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
- 다. 협약체결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자 3자간 연구비 협약 체결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연구비 지급

가. 지급방법

-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장(주관연구기관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지급
 - ※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은 과제별 협약 체결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

나. 지급시기 : 지원과제 확정 후 지원 결정 연구비 지급

- ※ 다년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는 연차평가 후 지원 결정된 연구비 지급

● 연구비 관리

- 본 사업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22조 등에 의거, 연구비는 반드시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산학협력단장(또는 주관연구기관장)이 중앙관리 하여야 함.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 연구 진행 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 연구기간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하였을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비 관리지침(저술계획서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VI. 연구과제 사후관리

● 계속과제 관리

가. 연차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연차별 연구종료 2개월 전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연차보고서(소정양식 온라인 탑재)
- 2011년 계속과제 제출 대상

구분	'09년 선정 3년차	'10년 선정 2년차	비고
단독연구	20과제	185과제	275과제
공동연구	21과제	49과제	
계	41과제	234과제	

※ 2011년도 선정 2·3년 과제는 2011년도에 평가대상이 됨

나. 연차평가

- 평가시기 : 연차보고서 접수 후 차년도 연구개시 전

○ 평가방법

구분	평가구분	평가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연차별 당초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점검	PM (필요시외부전문가)
2단계	종합평가	1단계 점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 결정	종합평가단

※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2] 참조

- 평가점수 및 조치 : 80점 이상 계속지원, 70점 이상 80점 미만(Yellow) 주의 후 계속지원, 70점 미만 지원중단

※ 주의 2회 누적과제는 자동 탈락(지원중단)

※ 자동탈락제도는 '11년도 선정과제부터 적용

- 평가결과 활용: 계속지원 여부 결정 및 차년도 연구지원비 조정

●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자료
 - 연구결과보고서(자유형식, 원문파일 탑재)
 - 연구요약문(국·영문)
 - ※ 국문 연구요약문은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
 -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 연구비 집행정산 내역서 :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서 입력
 - 연구성과 및 연구성과물 등의 정보입력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 제출된 연구결과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를 통해 PDF 형태로 공개할 수 있음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부정행위 사례(예: 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

1) 제출시기 :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2)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연구결과물은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SCI&SCIE, A&HCI, SSCI, SCOPUS) 학술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구분	1년	2년	3년	비고
단독연구	해당년수 × 1편 이상			저서 혹은 역서의 경우 단독 저작은 2편, 공동 저작은 1편으로 인정
공동연구	2편 이상		3편 이상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않음

3) 사사표기 :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등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

- 국문표기 : "이 논문(저서)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사업코드-과제번호)"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1-사업코드-과제번호)"

※ 사업코드 : 단독연구(327), 공동연구(32A)

※ 연구결과 보고서 및 최종 연구결과물 미제출시 제재

- 연구결과 및 연구결과물 관련 의무 미이행 과제는「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지원 처리규정」제29조 2항 및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함
 - 연구결과보고 미이행 : 연구비 전액 환수 및 환수일로부터 2년간 연구지원 신청제한
 - 연구결과물 제출 미이행 : 제출 마감일로부터 5년간 연구지원 신청제한, 단, 제한 기간 중 결과물 제출 시, 제출한 결과물의 평가를 통해 제재 해지 시점을 정함
 - ▶ 평가적용: '11년 선정과제부터 적용
 - ▶ 평가내용 : 최종 연구결과물의 당초 연구계획대비에 대한 충실도
 - ▶ 평가등급 및 결과처리

점수구간	등급	평가결과 조치
80점 이상	통과	제한기간 2년
60점 이상 - 80점 미만	C	제한기간 3년
60점 미만	D	제한기간 5년

- ▶ 연구결과물 미제출 및 평가에 따른 제한 기간은 5년을 넘지 않음
- ▶ 평가 후 조치 결과는 연구결과물 제출 시점으로부터 산정함

● 연구성과 관리 ▶

- 연구성과 Follow-up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물 제출 후에라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및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을 탑재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성과물을 송부하여야 함

연구성과(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 포함)의 수집과 배포는 기초학문자료센터(www.krm.or.kr)를 이용함

※ 기초학문자료센터(KRM) :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사업의 연구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산출물·원자료(Raw Data) 등 관련 자료와 지식(산출물)의 체계적인 수집·가공·공유체제를 구축하여 후속연구에 활용

연구성과물은 연구성과 중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을 포함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예: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4조에 따라 연구성과물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함

VII. 기타사항

● 간접비 지급

- 신규 과제의 경우 협약시점 적용고시율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며, 계속과제의 경우 선정년도 혹은 단계평가의 기준년도 적용 고시율을 적용

● 기타 참고사항

- 신청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신청자(연구책임자)는 심사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심사결과와 관련된 심사의견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심사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거,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아 연구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은 배아 연구기관으로의 등록과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얻어야 함에 따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아연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문 의 처

□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 사업 및 신청요강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지원팀 차석일 : 042-869-6204
- 인문사회연구지원팀 라혜림 : 042-869-6134

○ 전공심사 관련 문의

- 어문학단 : 042-869-6391 ~ 3
- 역사철학단 : 042-869-6245 ~ 6
- 법정상경단 : 042-869-6301 ~ 2
- 사회과학단 : 042-869-6083 ~ 5
- 문화융복합단: 042-869-6136 ~ 8(예술체육·융복합분야)

○ 전산 관련 문의(온라인신청, 연구업적통합정보, 전산장애)

- 정보팀 Help Desk: 1544-6118

【붙임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인건비	인건비	1. 연구보조원 : 연구에 참여하는 - (전문)학사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 * 개인별 총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정한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문)학사과정생 및 학사급 연구원 월 50만원 이내 - 석사과정생 및 석사급 연구원: 월 100만원이내 - 박사과정생: 월 150만원이내 * 연구보조원 인건비 계상은 참여기간에 따라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학사급 및 석사급 연구원은 연구참여가 가능한 국내기관에 소속이 있어야 하며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연구책임자 책임하에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학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당초 참여자격을 연구종료 시까지 인정함. 다만,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참여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를 준용할 수 있음
		2 박사급연구원 * 교육과학기술부, 전문기관 및 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제외	- 박사급연구원(월 170만원이내 / 1인당)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1. 각종 재료 및 시약,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 및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2. 해당 연구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적용되어야 함 -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용에 한해 인정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현지교통비 등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3.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국내외 정보 D/B 네트워크사용료, (해외)기술정보수집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윤문교열비, 번역감수,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회의비, 특허정보조사비 등 4. 현지조사시 설문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활동 경비 5.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논문게재료 등 연구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 소요액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 - 여비 는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 인정 - 회의비 및 회의제잡비(다과비 등)는 실제 소요액으로 반드시 카드사용 - 회의일시, 장소, 목적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된 회의록 구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의 경우, 도서명, 금액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현지조사활동비는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계상 가능 - 논문게재료 등 연구결과, 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는 연구종료 후 2년 이내에 집행가능하며, 미집행 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연구 수당	○ 연구책임자 및 일반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 인건비를 계상한 박사급연구원은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 일반공동연구원 : 1인 연420만원이내 *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계좌이체

☞ 인건비의 경우,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인력계좌로 직접 이체하여야 하고, 참여인력의 통장을 타인이 관리할 수 없음

【붙임 2】 심사항목 및 배점

● 기본연구 단독연구

구분	심사항목	심사내용	비고
독창성 (40)	연구주제 및 방법의 독창성 (40)	■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인가 ■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를 창출/증진시키는가 ■ 독창적인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는가	
수월성 (40)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및 타당성 (20)	■ 연구규모와 관련하여 연구내용 및 범위가 적절한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는가 ■ 타당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적합한 접근방법인가	
	실행계획의 구체성 (20)	■ 연구 추진과정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중요 선행연구가 정확하고 치밀하게 분석되었는가 ■ 자료의 수집·분석·해석 방법과 도구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연구규모(연구비 및 연구기간)가 적절한가(※일반연구에 한정함) ■ 제시된 연구목표(연구결과 등)의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연구 역량 (10)	학문적 전문성 및 관련 업적 (10)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업적이 축적되어있는가(질적 수준 포함)	
기대 효과 (10)	학문발전 기여도 및 학문적 파급효과 (10)	■ 많은 후속 연구를 파생할 수 있는가 ■ 각 학문분야 연구활성화에 기여하는가 ■ 연구 결과가 교육에 환류될 가능성이 높은가	

※ 단, 융합연구과제는 위 심사항목 배점을 80% 환산한 점수에, 아래 심사항목을 추가하여 별도 구성된 패널에서 심사함

구분	심사항목	심사내용	비고
융합연구의 적합성(20)	융합연구 주제의 적합성(10)	■ 연구과제가 융합연구로서 적합한 내용인가	
	융합연구의 수행역량(10)	■ 융합연구를 추진할 역량과 경험이 적절한가?	

● 기본연구 공동연구

구분	심사항목	심사내용	비고
독창성 (40)	연구주제 및 방법의 독창성 (40)	■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인가 ■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를 창출/증진시키는가 ■ 독창적인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는가	
수월성 (40)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및 타당성 (15)	■ 연구규모와 관련하여 연구내용 및 범위가 적절한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는가 ■ 타당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적합한 접근방법인가	
	실행계획의 구체성 (15)	■ 연구 추진과정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중요 선행연구가 정확하고 치밀하게 분석되었는가 ■ 자료의 수집·분석·해석 방법과 도구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연구규모(연구비 및 연구기간) 및 연구진 구성이 적절한가 ■ 제시된 연구목표(연구결과 등)의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연구유형의 적정성 (10)	■ 연구주제와 내용이 공동연구로 수행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연구 역량 (10)	학문적 전문성 및 관련 업적 (10)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업적이 축적되어있는가(질적 수준 포함)	
기대 효과 (10)	학문발전 기여도 및 학문적 파급효과 (10)	■ 많은 후속 연구를 파생할 수 있는가 ■ 각 학문분야 연구활성화에 기여하는가 ■ 연구 결과가 교육에 환류될 가능성이 높은가	

※ 단, 융합연구과제는 위 심사항목 배점을 80% 환산한 점수에, 아래 심사항목을 추가하여 별도 구성된 패널에서 심사함

구분	심사항목	심사내용	비고
융합연구의 적합성(20)	융합연구 주제의 적합성(10)	■ 연구과제가 융합연구로서 적합한 내용인가	
	융합연구의 수행역량(10)	■ 융합연구를 추진할 역량과 경험이 적절한가?	

● 연차평가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측정지표	비고
기수행 연구 실적 (80)	연구수행의 당초 목표대비 진도 실적(40)	
	연구수행결과 관련 실적(40)	
향후 연구계획 및 내용 (20)	기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5)	
	차년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10)	
	최종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5)	

【붙임 3】 공동연구계획서 양식

연구기간	선택
1년 과제	
2년 과제	
3년 과제	

연구 계획서

<2011년도 일반연구지원사업-기본연구(공동연구)>

연구규모	연구기간		년	2011. 5. 1 ~ . . .	
	신청 연구 비	1차년도	천 원	참여인원 (연구보조원 제외)	총 명 (박사급연구인력: 명)
		2차년도	천 원		
		3차년도	천 원		
		계	천 원		
연구과제명	국 문	온라인신청시 등록한 과제명과 동일하여야 함			
	영 문	온라인신청시 등록한 과제명과 동일하여야 함			

<목차> 위치

I . 연구계획

아래 사항은 참고하신 후 반드시 삭제하고 작성하십시오.

- ※ 연구계획은 “심사항목 및 측정지표”를 참조하시어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내용, 학문발전 공헌도, 결과 활용방안 등을 자유형식으로 기술함
(“목차”를 반드시 포함함-[총괄 앞장]과 [I.연구계획] 사이에 “목차” 배치)
- ※ 다년과제 또는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필요성을 추가 기술함
- ※ 연구계획서(연구계획, 참고문헌 목록, 연구추진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포함) 용량은 10Mb (또는 A4 용지 20매 내외)이내를 원칙으로 함. 단, 참고문헌 목록은 20매에 포함되지 않음
-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반드시 쪽수(page)를 기재
- ※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Review)로 진행됨.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연구참여자 및 연구보조원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 함.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참고문헌 중에서 본인이 저자인 문헌의 경우 본인이름을 삭제할 필요는 없음

1.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의 독창성, 선행연구와의 비교 등 포함)

(※ 융합연구과제의 경우 융합연구의 필요성 및 적합성에 대한 기술 포함)

2. 연구방법 및 내용

(다년과제는 연차별 연구계획을 각각 기술)

3. 결과 활용방안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인력양성 방안,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등 기술)

4. 기타사항

(다년과제 또는 해외출장의 필요성 및 연구비 집행계획 등 기타 연구내용 계획에 필요한 사항 기술)

5. 참고문헌

Ⅱ. 연구추진계획

1. 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등을 기술)

2. 연구수행일정

(연차별 과제목표와 추진기간별로 연구수행내용 등을 기술)

< 예시 >

1차년도 과제목표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011. 5		
6		

※ 다년과제의 경우 2차, 3차년도 일정도 작성

3. 연구진 구성 및 연구원별 연구계획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및 연구자별 연구수행계획을 기술)

- ☞ 향후 연구수행결과에 따른 책무는 모든 연구참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므로 공동연구원별로 실질적인 역할분담내역 및 연구수행계획을 기술함. 연구책임자도 실제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관리의 기능만 담당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기재하지 않음.

< 예시 >

참여형태 구분		참여자 구분	연구역할분담내용	연구보조원 활용인원수
연구책임자		갑		
공동 연구원	일반공동 연구원	갑		
		을		
		병...		
	박사급 연구인력	갑		
		을		
		병...		

4. 연구비 규모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타당성 등 기술)

5. 연구결과 발표 예정 학술지

Ⅲ. 대표업적

신청과제 연구참여 구분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원 ()	요약문 번호	
※ 공동연구원(박사급연구원 포함)의 경우에는 갑, 을, 병 등으로 표시			
연구업적 요약문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 제목			
업적 구분	저서() 역서() 학술지() 외국특허()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 참여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 초록(abstract) 또는 요약문 (특허의 경우 출원일, 출원국가 및 내용 등을 기재)			

※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에 대하여 각각 작성함

※ 공동연구원은 박사급연구원을 포함함

※ 요약문 번호 명기 방법 (연구업적별 작성)

예) 연구책임자: 책임-1, 책임-2, 책임-3.

공동연구원: 갑-1, 갑-2, 갑-3 / 을-1, 을-2, 을-3 / ...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기재하지 않음

【붙임 4】 단독연구 연구계획서 양식

단독연구	연구기간	정액연구
	1년 과제	
	2년 과제	
	3년 과제	

※ 정액연구는 지원기간이 1년임

연구 계획서

<2011년도 일반연구지원사업-기본연구(단독연구)>

연구규모	연구기간	년	신청 연구비	1차년도	천원
				2차년도	천원
				3차년도	천원
				계	천원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목차> 위치

I. 연구계획

아래 사항은 참고하신 후 반드시 삭제하고 작성하십시오.

- ※ 연구계획은 “심사항목 및 측정지표”를 참조하시어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내용, 학문발전 공헌도, 결과 활용방안 등을 자유형식으로 기술함
(“목차”를 반드시 포함함-[총괄 앞장]과 [I.연구계획] 사이에 “목차” 배치)
- ※ 다년과제 또는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필요성을 추가 기술함
- ※ 연구계획서(연구계획, 참고문헌 목록, 연구추진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포함) 용량은 10Mb (또는 A4 용지 15매 내외)이내를 원칙으로 함. 단, 참고문헌 목록은 15매에 포함되지 않음
-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반드시 쪽수(page)를 기재
- ※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Review)로 진행됨.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연구참여자 및 연구보조원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 함.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참고문헌 중에서 본인이 저자인 문헌의 경우 본인이름을 삭제할 필요는 없음

1.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의 독창성, 선행연구와의 비교 등 포함)

(※ 융합연구과제의 경우 융합연구의 필요성 및 적합성에 대한 기술 포함)

2. 연구방법 및 내용

(다년과제는 연차별 연구계획을 각각 기술)

3. 결과 활용방안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인력양성 방안,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등 기술)

4. 기타사항

(다년과제 또는 해외출장의 필요성 및 연구비 집행계획 등 기타 연구내용 계획에 필요한 사항 기술)

5. 참고문헌

Ⅱ. 연구추진계획

☞ 다년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작성하십시오.

년 월	연구수행내용	비고
2011. 5		
6		
7		
8		
9		
10		
11		
12		
2011. 1		
2		
3		
4		

※ 연구개시 시기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Ⅲ. 대표업적

연 구 업 적 요 약 문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 제목	
업적 구분	저서() 역서() 학술지() 외국특허()
연구 참여자수	1명 () 2명 () 3명 () 4명 () 5명이상 ()
■ 초록(abstract) 또는 요약문 (특허의 경우 출원일, 출원국가 및 내용 등을 기재)	

- ※ 온라인 신청 시 선택한 연구업적에 대하여 각각 작성함 (3편 각각 작성)
-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기재하지 않음